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21802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호, 정익우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7. 19.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소273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단체 회원인 원고의 아버지 D의 회원 자격을 승계하는 자는 C단체 회칙에 따라 원고여서 원고가 C단체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D의 회원 자격을 승계하는 것처럼 하여 회원자격으로 C단체로부터 9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회원인 원고에게 9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가 C단체의 회원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C단체의 회원이어서 C단체로부터 9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 판사 박이규